

[별표 5의12] <개정 2010.11.10>

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

표시장치	식별색상	식별단어 또는 약어	식별부호	조명기준
수동초우크 자동표시기	황색			
중립기어 자동표시기	녹색			
전조등 자동표시기	청색 녹색		주행빔  변환빔 	
안개등 자동표시기	녹색 황색		전방  후방 	
방향지시등 자동표시기	녹색	-		-
비상경고신호등 자동표시기	녹색 또는 적색	-		-
연료량자동표시기	황색	연료 또는 Fuel		-
연료계	-			설치 필요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적색	온도 또는 Temp		-
충전자동표시기	적색	전압, 전류, 충전, Volts, Amp 또는 Charge		-
오일압력자동표시기	적색	오일 또는 oil		-
ABS고장자동표시기	황색	자동제어 또는 ABS		-
속도계	-	km/h 또는 MPH	-	설치 필요

주

1.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4.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